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7.18.(월) 조간 2022.7.17.(일) 11:00	배포 일시	2022. 7. 15.(금) 오후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홍성현 (044-200-5641)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7.18(월)부터 2주간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품목 : (수산물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음식점)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개 품목

* 대상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꾸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막장어, 활방어 등 17개 품목

이번 특별점검은 7월 18일(월)부터 3주간 이루어지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개소, 음식점 89만 개소, 통신통업체 13만 개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개소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이 계획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주꾸미, 낙지, 꽃게 그리고,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횡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꾸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며,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800여 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 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책임자	과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홍성현 (044-200-5481)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	책임자	과장 장옥진 (051-400-5690)
		담당자	사무관 오영진 (051-400-5650)

참고1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도입시기 : 수입수산물('94), 국산('95), 가공품('96), 소금('11) / 음식점 표시('12년)

□ (대상품목)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음식점 : 15개 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음식점 (15개 품목)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13년(고등어, 명태, 갈치) → '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 → '20년(다랑어, 아귀, 주꾸미)

□ (대상업체) 약 146만 개소(유통, 음식점, 통신판매)

합 계	유통·판매· 가공업소*	음식점** (일반, 휴게, 집단급식소 등)	통신판매업체
146만개	44만개	89만개	13만개

*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TV홈쇼핑·인터넷·신문 등 모두 포함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처벌기준)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지자체, 해경청 등

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표시, 혼동 우려 또는 혼동 목적으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품목과 혼합 등

- (5년 내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 (2년간 2회 이상) 위반 금액의 5배 과징금(최고 3억원 이하)

② 미표시의 경우, ①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②음식점은 품목별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 과태료 부과

※ 최근 3년('19~'21) 위반 현황 : 미표시 1,642건(2.2억), 거짓표시 600건(37.5억)

참고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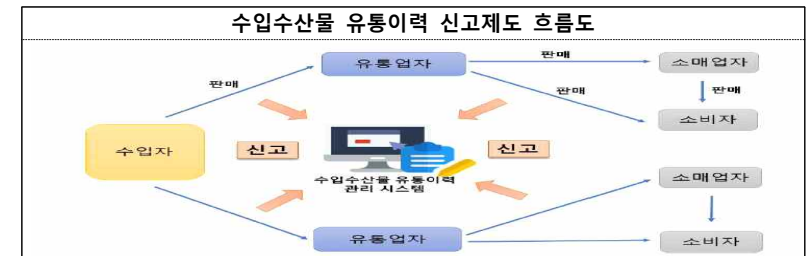
-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로 업무 이관('20.10.1)

□ (대상품목) 17개 품목(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

대 상 품 목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공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묵장어, 활방어

□ 업무 프로세스



□ (처벌기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과태료(단위 : 만원)			
	1회	2회	3회	4회
미신고	50	100	300	500
거짓신고	100	200	400	500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50	100	300	500
조사·열람·수거 등 거부·방해·기피	50	100	300	300

참고3

원산지 단속 사진

